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65 발의연월일: 2021. 1. 8.

발 의 자:구자근・태영호・김영식

조수진 · 서병수 · 장제원

전봉민 · 홍석준 · 김용판

최형두 · 김태흠 · 송언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,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도입되었음. 그런데 청년들의 취업난 가중으로 학생들의 취업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그에 따라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점차 심화되고 있음.

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인하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계층에게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. 또한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등록금 부담이 막대함에도 학자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, 학자금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하

여 결정하도록 하며, 상환의무의 발생시점을 대출시점에서 취업한 시점으로 변경하고,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여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(안 제3조, 제11조, 제16조 및 제16조의2).

법률 제 호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 중 "외국인 및 대학원생은"을 "대학원생을 포함하며, 외국인은"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전단 중 "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"를 "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 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경우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을, 생활비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과"로 한다.

제16조제1항 본문 중 "대출시점부터"를 "취업한 시점부터"로 한다.

제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.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-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-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
- 4. 다자녀 가구의 가구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대출 금리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시되는 금리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(정의) ------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 1. ~ 3. (생 략) 4. "대학생"이란 고등교육기관 에 재학(입학 또는 복학 예정 인 경우를 포함한다)하고 있 는 학생(외국인 및 대학원생 -----대학원생을 포함하며, 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 외국인은----5. ~ 13. (생략) 5. ~ 13. (현행과 같음) 제11조(대출 금리) ① (생 략) 제11조(대출 금리) ① (현행과 같 유) ②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상환 ②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경우 기준금 과 실질금리, 대출원리금의 상 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리와 물가상승률을, 생활비대출 금리를 감안하여야 한다. 이 경 의 금리를 결정하는 경우 매년 우 그 금리는 「국채법」에 따 물가상승률과-----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 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6조(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) 지 ① 채무자는 <u>대출시점부터</u> 대 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한다. 다만,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 까지 상환을 유예한다.

② ~ ③ (생 략)제16조의2(이자의 면제) (생 략)

<신 설>

제	 16조(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) ① <u>취업한 시점부터</u>
	·
	② ~ ③ (현행과 같음)
제	16조의2(이자의 면제) <u>①</u>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	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경우 재학
	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이자를 면제한다.
	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
	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
	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

4. 다자녀 가구의 가구원